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활용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0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제221920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활용 (안 제44조제5항 신설)	2

I.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제221920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12.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동 지하정보에는 지질정보, 시추(試錐)정보, 관정(管井)정보와 수도·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³⁾

현행법 제43조제1항⁴⁾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를 효율적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
2. 지하공간통합지도

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 통합지도’⁵⁾ 등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44조제3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⁶⁾은 지하개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업자⁷⁾ 및 지하시설물관리자⁸⁾가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등의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하공간통합 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하정보와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로 구축·운영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함)⁹⁾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활용될 수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7.>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7.>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가. 삭제 <2023. 3. 21.>
 - 나. 삭제 <2023. 3. 21.>
 -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 공사¹⁰⁾와 같이, 문화유산 관련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등의 지하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문화유산 정보와 지하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활용 되도록 함으로써, 공사 시행 전 단계에서부터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하시설물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당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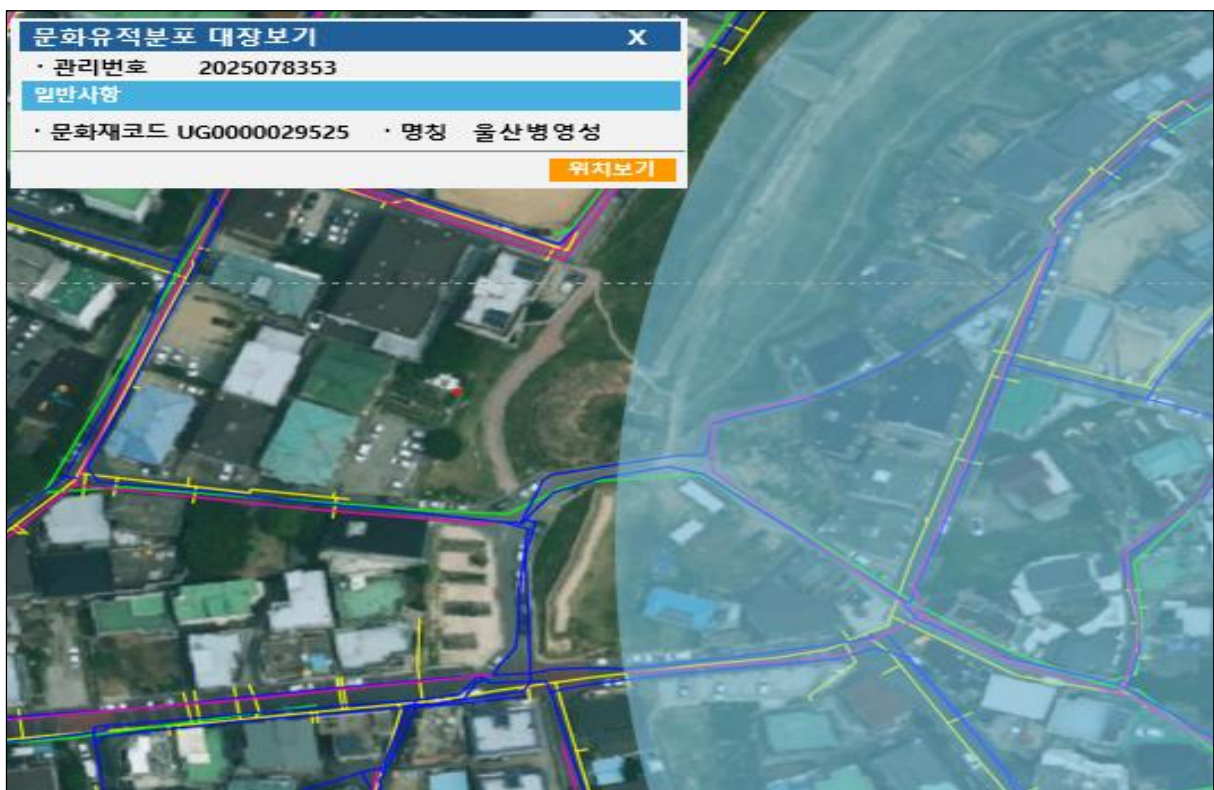
10)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상수도관에 ‘발목’ - 웅벽 구간 아래 통과 되듯 확인, 5개월째 공사 중단...공정률 6%, 중구, 구조 변경 등 재설계 검토, 지연 장기화 연내 준공 어려울 듯”, 울산매일UTV, 2026.3.17.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8~9월 재개 전망 - 중구, 이달 중 상수도관 이설 착수, 24억 투입 연내 1단계 공사 마무리, 내년 국비 등 확보 2단계 공사 진행”, 울산매일UTV, 2026.6.15.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토교통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문화유적분포지와 상수관로, 하수관로, 통신관로, 가스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을 지도에 함께 표시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 확인 예시 】



※자료: 국토교통부(울산 병영성 서문지 일대 지하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캡처 화면)

*주- 각각의 관로 클릭 시 매설깊이, 관리기관 정보 등 속성정보 조회 가능

·(하늘색 음영지역): 문화유적분포지

·(파랑): 상수관로 ·(보라): 하수관로 ·(초록): 통신관로 ·(노랑): 가스관로

개정안에 따른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상호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이 현행보다 발전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구현해야 하는 연계·활용의 구체적인 수준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하정보통합체계는 위 그림과 같이 문화유적의 분포 외에 주택, 도로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도 지하정보와 함께 지도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음.

이는 주택, 도로 등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사 등에 대해서도 지하시설물의 매설 현황 등 지하정보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¹¹⁾ 지하정보와의 연계·활용 대상 정보에 ‘문화

11) 현행법 제44조제3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서는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등의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유산 정보'만을 특정하여 달리 명시할 필요성, 현행법 체계(시행령 제35조의2) 및 현재도 연계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되고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9.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0. 건축물 설치사업

11. 그 밖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